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

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 중 “금융소비자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”을 “금융소비자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항에서 제8항은 제4항에서 제10항으로 한다.

②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자본시장정책관은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제3항제27호의 사항 중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9조 중 “금융정책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”을 “금융정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항에서 제9항은 제4항에서 제11항으로 한다.

②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구조개선정책관은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 제7호의2, 제8호의2,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제3항제42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”을 “7퍼센트를 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”을 “7퍼센트를 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“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”를 “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

별표 1 중 “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”와 “2.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계” 이하는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214”를 “215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6”을 “7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“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”와 “2.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계” 이하는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214”를 “215”

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4”를 “5”로 한다.

별표 4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9월 30일까지”을 “2021년 9월 30일까지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 중 “2020년 7월 31일”을 “2021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용하고 있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소관사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수행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용하고 있는 4.5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5급 1명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<u>금융 소비자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신 설>	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<u>금융 소비자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②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	③ 자본시장정책관은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제3항제27호의 사항 중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② ~ ⑧ (생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제9조(금융정책국) ① <u>금융정책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	제9조(금융정책국) ① <u>금융정책국장</u> 은 ----- -----

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 <신 설>

 <신 설>

② ~ ⑨ (생략)

제18조(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
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

-----.

②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구조개선정책관은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7호의2, 제8호의2, 제15호부터 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제3항제42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④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
① -----

----- 7퍼
센트를 넘지 않는-----

원은 별표 1의2와 같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9조(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
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9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

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3항 및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"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"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
① -----

-----7
퍼센트를 넘지 않는 -----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

① -----

----- 공무원의 정원 중
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

<u>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</u>	<u>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
총계	217	총계	217
<u>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216</u>	<u><삭 제></u>	
·	·	·	·
·	·	·	·
일반직 계	<u>214</u>	일반직 계	<u>215</u>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행정주사보	<u>6</u>	행정주사보	<u>7</u>
·	·	·	·
<u>2.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계</u>	1	<u><삭 제></u>	
일반직 계	1	<u><삭 제></u>	
행정주사보	1	<u><삭 제></u>	

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
총계	217	총계	217
<u>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216</u>	<u><삭 제></u>	
·	·	·	·
·	·	·	·
일반직 계	<u>214</u>	일반직 계	<u>215</u>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행정주사보	<u>4</u>	행정주사보	<u>5</u>
·	·	·	·
·	·	·	·
<u>2.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계</u>	1	<u><삭 제></u>	
일반직 계	1	<u><삭 제></u>	
행정주사보	1	<u><삭 제></u>	

[별표 4]

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1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	4명 (4급 1명, 5급 2명, 7급 1명)	<u>2021년 9월 30일까지</u>

[별표 5]

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(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)

1. 금융혁신기획단(존속기한: <u>2021년 7월 31일</u>)	10
총계	10
일반직 계	10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2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5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2. 기업구조개선과(존속기한: <u>2020년 12월 31일</u>)	
총계	7
일반직 계	7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	5
행정주사	1